

〈(재)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제10조(결격사유)〉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종전 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던 자
8. 병역기피 중에 있는 자
9. 그 밖에 재단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